

금융그룹 통합감독… 삼성·교보 등 자본확충 비상

명분은 ‘그룹차원 리스크’ 파악, 속내는 지배구조 압박?

금융위, 세부기준 초안 공개

‘그룹차원 리스크’ 추가 규제
적격자본, 필요자본 보다 많아야
사용어려운 자본, 적격자본 제외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은 그룹차원에서 금융그룹의 자본을 규제하겠다는 자본적정성 평가다. 기존에는 금융규제를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만 봤지만 앞으로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추가로 본다는 의미다.

당초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던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을 공개했다. 건전성이 미달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담은 통합감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룹들이 미리 조치에 나서라는 얘기다.

앞으로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감독대상에 오른 7개 금융그룹은 전체의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없지만 실질적인 금융그룹인 만큼 동반 부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

자본적정성 구성항목		산정 방식
기본 항목	①자기자본 합계액	▶금융계열사 자기자본의 합산액
	②업권별 최소요구자본	▶감독대상 금융회사: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 (예: 은행의 경우 8%)
	③비규제 금융업: 총자산의 8%	
차감 항목	④자본의 중복이용 (적격자본 차감)	▶금융계열사 출자: 전액 차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
	⑤집중위험	※ 통합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 ▶(1단계) 비은행금융지주 규제방식 준용 ▶(2단계) 금융권 집중위험규제 단일규제방식 도입
	⑥전이위험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등급(1~5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 (총위험자산의 0.5~2.5%)

/자료=금융위원회

* (참고) 자본적정성 지표 = $\frac{\text{적격자본} (①\text{자본합계} - ③\text{차감항목})}{\text{필요자본} (②\text{최소요구자본} + ④\text{집중항목})} \geq 100\%$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출자금은 물론 상호·순환·교차출 자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그룹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 이는 집중요인으로 분류돼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된다. 해외부동산 관련 위험노출(익스포저)이 크거나 중국·동남아 익스포저가 큰 경우다.

그 결과 7개 금융그룹 모두 자본비율이 일제히 낮아졌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 후 자본비율은 ▲삼성 221.2% ▲교보생명 200.7% ▲DB 168.7% ▲롯데 176.0% ▲한화 152.9% ▲미래에셋

“삼성그룹, 자본적정성 100%대 초반”

이세훈 금융그룹감독단장 일문일답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삼성그룹의 경우 107%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업종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카테고리별로 위험이 편중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 특정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금융그룹을 카테고리별로 평가를 하고 위험관리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 이 내용으로 초안에서 수정했다기보다는 명확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집중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산출이 가능하나.

“집중위험은 아직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다. 삼성은 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는 빠

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나 나올 것 같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어떻게 221%에서 107%가 감소하나.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 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 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 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 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

유한 삼성생명 대한 익스포저가 28조원 정도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한도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19조나 20조를 상회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 얼마나 추가자본을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도 큰 변수다. 삼성전자의 자본비율이 집중위험까지 반영하게 되면 17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하면 자본비율이 114%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의 현재 자본기준이 30조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사항을 종합해도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자본적정성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기간을 두고 해소하나.

“금융그룹은 집중위험의 경우 6월 말 현재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해 3~7년에 걸쳐 필요자본을 분할해 적립토록 하되 7월 이후 신규로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 기준을 설정할 것이고, 100% 밑으로 하락하면 최대한 적절히 맞춰야 한다. 외국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사례를 봤을 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 같다. 바젤규제는 7년, 유럽연합(EU)도 수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기업 시정조치 기간 최장 6개월 부여

» 1면 ‘주 52시간제 본격화…’서 계속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측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

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로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

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150.7% ▲현대차 127.0% 등이다.

모두 100%를 웃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1~5등급으로 평가토록 돼 있는 전이위험은 모든 그룹이 평균인 3등급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고, 집중위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 위험 관리실태도 평가하지 않았고, 집중위험이나 중복자본 등 조정 항목의 세부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자본비율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위험은 금융그룹의 노출된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필요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산업·지역별, 특수관계인 등 거래상대자별, 대주주와의 거래, 비금융계열사 출자액 등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8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집중위험이 커져 전체 그룹의 자본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능력도 평가대상이 된다. 즉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모니터링

과 위험 관리정책 등 위험관리 체계와 위험집중·내부거래 관리와 소유·지배구조 등 전이위험 관리, 이해상충 방지 등 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증자든 자산처분이든 금융그룹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종량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개선만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중위험의 경우 6월 말 기준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해 3~7년에 걸쳐 필요자본을 분할해 적립토록 하고, 7월 이후 신규로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모범규준 초안에 있던 금융위의 이행명령 미이행시 금융그룹 명칭 사용금지, 동종금융그룹 전화 등의 행정처분과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은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입법사항인 만큼 향후 입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사 CEO 간담회서 발언하는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바에 스텝 꼬인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 요청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수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이 감리조치안을 수정하면 사전통지부터 절차가 다시 시작돼 결과 도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1년간의 감리 후 내린 결론에 다시 손을 대더라도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증선위 요청을 묵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칫 금감원과 증선위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보완 요청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을 재검토하며 조치안 수정을 고민 중이다.

증선위 요청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5년이 아닌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종속회사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8일(현지시간) 바이오젠이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금감원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당연한 상황에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를 변경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렸기 때문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